

[별표 2]

##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### 1.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으로 도태한 가축

#### □ 도태 장려금 평가액

-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·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.

#### □ 산지가격 기준

-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[별표 1]의 살처분한 가축 중 젖소·육우·한우·소종축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.
  - 다만, 유사산 태아는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## ※ 도태 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

- 농협중앙회에서 조사·게재(홈페이지 [www.nonghyup.com](http://www.nonghyup.com))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·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,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·도별 평균가격이 조사·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·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#### □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

- 해당 가축을 출하·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  - 해당 가축을 출하·도축·경매·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에서 제외

- \*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## 2.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

(단위 : 원/두당)

축종별	구분	도태 장려금 지급 기준액	비고
젖소	송아지	200,000	6개월령이상에 한함
	초임만삭	500,000	
	초산우	400,000	
	다산우(2-5산)	300,000	
	노산우·기타	200,000	
한우	임신우(초임단계이후)	400,000	임신우(초임단계이후) 제외 임신우(초임단계이후) 제외
	300~499kg 이하(암·수)	200,000	
	299kg 이하(암·수)	300,000	
돼지	모돈	150,000	
	웅돈	150,000	
소종축 · 종돈	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 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, 결정한 금액	
종계	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	(주령별 가격-계육판매대금) × 40%	종계의 주령별 가격산정 - 산란용종계 · 27주령 : 생산비+ 잔존가치[종란 판매개수 221개 × 병아리 가격의 1/4 × 10%] · 초생추~27주령미만 : 초생추 상한가격과 27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· 27주령이상~78주령미만 : 27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- 육용종계 · 31주령 : 생산비+잔존가치[종란 판매개수 148개 × 병아리 가격의 1/2 × 10%] · 초생추~31주령미만 : 초생추 상한가격과 3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· 31주령이상~70주령미만 : 3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토종닭 종계</li> <li>· 25주령 : 생산비+잔존가치[종란 판매개수 188개× 병아리 가격의1/2×10%]</li> <li>· 초생추~25주령미만 : 초생추 상한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</li> <li>· 25주령이상~68주령미만 : 25주령 상한가격과 6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</li> <li>※ 초생추 : (사)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(육용) 기준. (산란·토종닭 종계 초생추는 농장별 종계 병아리 구입가격으로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기준)</li> <li>※ 종계노계 : (사)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(종계노계) 기준</li> </ul>
사슴	꽃사슴 레드디어 엘크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사슴협회 등과 협의, 결정한 금액	
염소	염소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, 결정한 금액	

\* 도태 장려금은 도태 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 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\* 종계·산란실용계·종오리·메추리의 단계별 가격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한다.